

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직원보수규정 17조의2(성과급) 및 교원 업적평가 관리 규정 제6조(업적평가의 활용)에 의거, ‘교원 성과급지급’의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교 교원(전임, 비전임 포함)의 성과급 지급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평가영역 및 지급 기준) ① 업적평가 성과급은 평가기준 연구 45, 교육 45, 봉사 10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교원업적평가 관리규정 <별표1>, <별표2>, <별표3>에 따라 평가한다. 지급액은 [별표1]에 따른다.

② 프로젝트 수행의 경우 [별표1]에 따라 평가 및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시기)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매년 2월말에 지급하며,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성과급은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 시기 및 결과 통보) 평가는 매 학년말에 실시한 후 대상교원에게 개인별로 통보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6조(재원) 교원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교비와 지원금 등 기타로 하되 매년 총장이 정한다. 단,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제7조(세부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[별표 1] 성과급 평가 기준 및 지급 기준

구 분		포상 내용	비 고
업적평가 성과급	전 임	최대 50만원	
	비전임	최대 30만원	
프로젝트 수행 성과급 (T/F, 위원회 활동, 기타 과제수행 등)	월 8회 이상 회의참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 하였으며, 회의록 또는 연구 성과물을 제출한 경우	300,000원/월	1회 시간 기준 : 2시간
	월 4회 이상 회의참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 하였으며, 회의록 또는 연구 성과물을 제출한 경우	200,000원/월	
	월 2~3회 회의참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 하였으며, 회의록 또는 연구 성과물을 제출한 경우	100,000원/월	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